

금융재산의 효율적인 추적방안

- 울산광역시 중구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후 IMF 경제위기를 맞았고 그 극복과정과 국제화·개방화된 무한경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행해진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중앙과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체제 정비,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 기능중심의 조직지향, 자치경영 행정이라는 목표로 공무원 수 축소와 읍·면·동 기능조정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 지방세무조직도 상당한 축소와 조직운영 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지식수준 향상

과 지방자치가 본격화되어 갈수록 복지·환경 등 행정의 각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이 날로 증가되어 재정수요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여야 하는 지방세입은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납세자들의 심리불안과 납세의무 이행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심이 팽배해져 납세기피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납세능력상실, 납세자중심의 판례 등으로 점차 고질화되어 가고 있어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디지털 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보급으로 또 하나의 생활이 되어버린 인터넷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달로 우리를 둘러싼 생활환경도 날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를 흔히 지방화 시대라고 한다. 참여정부는 분권에 대한 의지가 지난 어느 정

권보다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권 및 이양에 의해 “자율과 책임을 갖춘 지방을 만들겠다”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분명한 지방관은 앞으로 새로운 지방시대가 전개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다.

지방분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은 자주재원의 확충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제도 등 전자시대에 걸맞는 납세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적 자립을 위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더불어 납세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변화하여 지방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증가되고 납부하지 않으려는 고질채납자의 납부기피방법도 다양화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체납액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원충당은 미미한 수준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징세관리 행정과 체납액 징수방안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자료는 세무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세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일선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카드 매출채권,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보험금 압류 추진 시 기대효과, 운영방법상의 주의사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방법을 확대·발전시켜 체납처분업무에 사용한다면 징수기간과 징세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로 인한 직원의 업무량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 등을 기술하였으며 II 과 III 은 본론으로 200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청 체납세 기본현황과 압류유형별 징수 현황을 표본으로 설명하였으며,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 카드 매출채권 압류, 신용카드결제계좌 압류, 보험금 압류추진, IV 에 금융재산 압류추진 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과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 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과 과제를 다시 한번 개관하면서 끝맺고자 한다.

II. 체납액 기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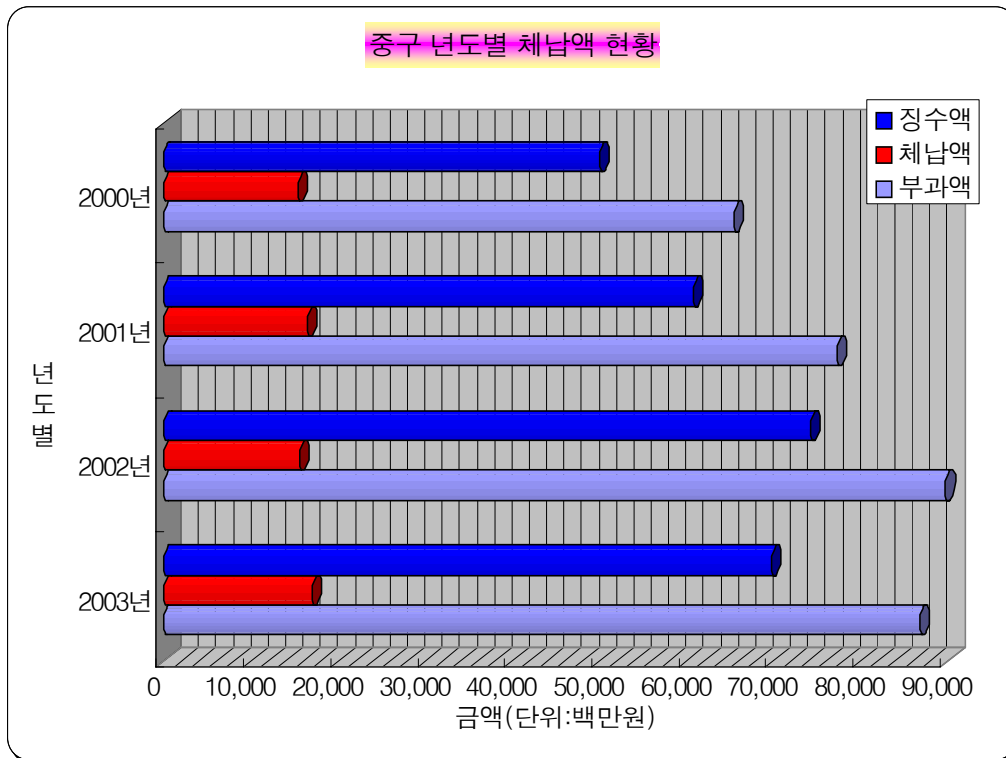
2. 울산광역시 중구 체납액 현황

<표-1>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의 연도별 체납세 현황으로 매년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단위 : 백만원)

구·군별	부과액 (A)	징수액 (B)	불 납 결손액(C)	체납액	징수율(%) (B+C)/A
합 계	319,357	246,984	7,936	64,357	79.8
2003년	86,783	67,995	1,764	17,024	80
2002년	89,791	72,536	1,701	15,554	83
2001년	77,257	59,441	1,407	16,409	79
2000년	65,446	47,012	3,064	15,370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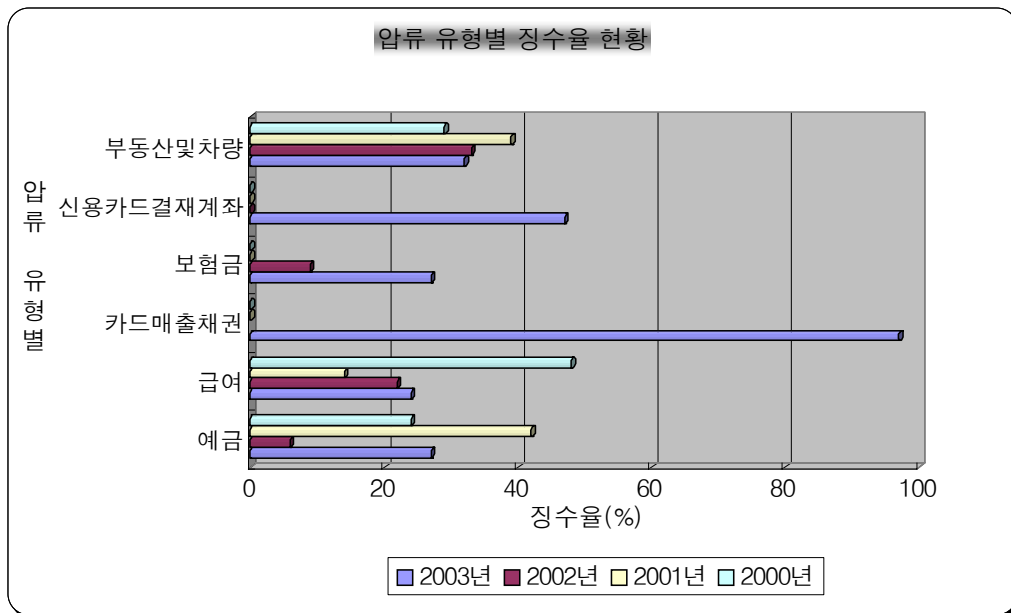


2. 중구 압류·유형별 체납징수 현황

〈표 2〉

(단위 : 백만원)

년도	압류유형	예 금	금 여	카드 매출채권	보험금	신용카드결제 계좌	부동산 및 차량
2003	체납액	2,237	278	512	3,421	2,311	7,341
	수납액	623	66	499	924	1,186	2,326
	징수율(%)	27	24	97	27	51	32
2002	체납액	892	391	0	1,012	0	8,831
	수납액	55	88	0	93	0	2,927
	징수율(%)	6	22	0	9	0	33
2001	체납액	1,140	250	0	0	0	7,657
	수납액	481	35	0	0	0	3,012
	징수율(%)	42	14	0	0	0	39
2000	체납액	912	95	0	0	0	9,012
	수납액	227	46	0	0	0	2,928
	징수율(%)	24	48	0	0	0	29



<표-2>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의 유형별 압류에 따른 징수율을 도표 및 차트로 나타낸 것으로 부동산·차량의 경우 체납세 발생 즉시 징수가 어려우나, 카드 매출채권 등 새로운 징수기법에 의한 금융재산의 압류는 즉시 징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압류에 비하여 징수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Ⅲ. 새로운 금융재산의 추적 방법

1.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의 필요성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기업이나 가게의 살림살이도 주름살이 생기면서 각종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지방세가 체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체납세 징수는 물론 체납의 원천적 방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체납자 중에는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일부 부도덕한 납세자가 더러 있지만,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체납하는 경우도 많아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체납액의 상당 부분은 징수가 가능한 것이 많고 또 체납자 본인이 체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나 부동산 압류는 기본이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계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 체납된 지방세를 정리함에 있어 금융자산의 압류형태는 금융권의 예금위주였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융자산조회는 전국 지점에 대한 일괄조회가 불가능하고 주로 체납자 주소지 인근의 몇몇 은행 지점에 대하여만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사실상 체납자 소유의 계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막상 현행법에 의거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시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금융기관 거래자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고객관리차원에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체납된 지방세를 정리함에 있어 인력 및 시간의 소요가 많은 현행 징수제도와 징수 활동은 체납세 징수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소수의 징수인력으로 많은 건수의 체납세관리와 효과적인 징수활동이 되기 위하여는 다양한 징수채널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체납자 포함)이 카드를 소지·사용하고 있어 계좌추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 최근 소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융자산(채권)의 새로운 징수기법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카드 매출채권 압류

가. 카드 매출채권 압류의 개요

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세금 내는 것은 내마음이다”며 버티고 있는 무재산 자영업 체납자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징수방법이다.

가맹점의 매출채권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 41조, 제44조 및 동법 통칙3-5-41(채권), 3-5-21~43(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채권으로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장래의 채권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대금 압류는 신용카드회 원인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고 신용카드사에 매출 및 서비스 제공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됨으로 매출대금 압류 이후 가맹점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 신용카드 가맹점 조회는 금융실명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배제되므로 특정점포에 조회하지 않고 가맹점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www.nts.go.kr) 사업자 등록자료 조회를 통한 계속 사업여부를 확인 후, 체납자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채권을 현금과 병행하여 카드결제로 운영할 시 체납자에게 지

급할 카드매출대금에 압류하고 수시 추심관리함으로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 울산광역시 중구 추진사례

- 한국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현황 조회(2003. 6. 20)
 - 100만원 이상 체납자 3,315명
- 한국여신금융협회 조회결과 회시 : 2003. 6. 30.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체납자 958명
- 대상자에 대한 확인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계속사업 여부 확인
 - 계속사업자 146명 (폐업자 812명)
- 회신결과를 토대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자료 구축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하면서 계속사업자 146명 512백만원
- 추진일정 : 2003. 7. 1 ~ 8. 31(60일)
 - 매출채권 압류예고 및 징수독려 실시 : 2003. 7. 1 ~ 7. 31.
 - 미납부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 : 2003. 8. 1 ~ 8. 31.
- 압류대상기관
 - 국내 7개 신용카드사 (국민, LG, 비씨, 외환, 롯데, 현대, 삼성)
- 미납부자에 대한 압류작업 실시 : 2003. 8. 16
 - 인원 및 압류 금액 : 75명, 26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카드사별	엘지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건수/압류금액	75/244	74/284	72/244	72/226	39/151	45/176	30/111

- 카드사별 압류현황
- 체납액 징수 : 144명, 499백만원
 - 압류예고이후 자진납부자 : 71명, 250백만원
 - 압류이후 납부자 : 24명, 59백만원
 - 추심하여 충당한 자 : 49명, 190백만원

다. 카드 매출채권 압류의 징수효과

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카드 가맹점 매출계좌를 압류함으로써 현재 영업중인 무재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하며, 고질·상습체납 자영업자 특히, 종합소득할 주민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압류시 주의사항

첫째, 팩스에 의한 문서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하여 해제조치를 하여야 할 때 4일에서 7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인데 특히, 주유소의 경우 20%가 현금징수이고, 80%가 카드결제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압류의 효력으로는 가장 확실하나 해제시 소요기간이 일주일일이 소요되어 자금유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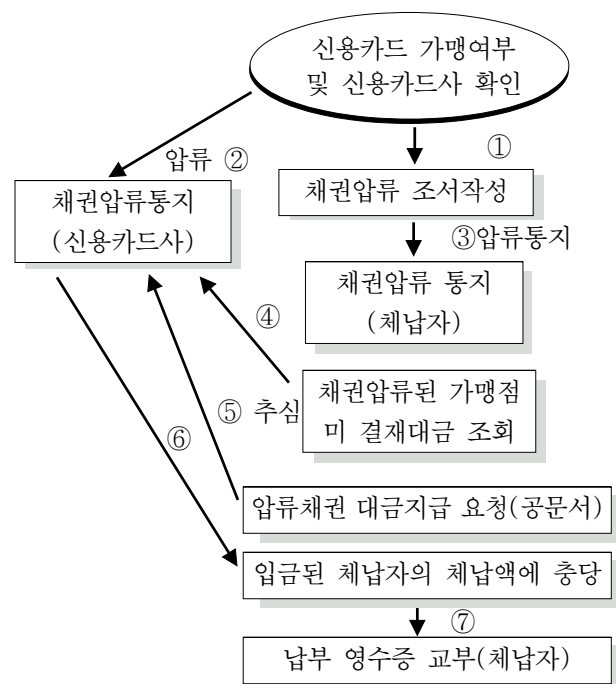
둘째, 압류 후 보류금액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비씨카드사에서는 인터넷상으로 압류보류금액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나, 타사의 경우에는 실시간 확인이 되지 않아 보류금액이 존재하는지 압류금액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확인 어려움 압류보류금액이 장기화되기 쉬우므로 수시로 전화 또는

문서로 확인하여 압류금액에 도달 시 즉시 추심 후 압류해제 조치를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 카드 매출채권압류의 법적근거

- (1) 지방세법 제28조 (채납처분)
- (2) 지방세법 제64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3)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 (4)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제한의 통보)

바. 카드 매출채권압류의 업무흐름도



- ※ 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사업장별 압류)
- ※ 미 결제대금 조회시 특별한 서식은 없고, FAX 조회도 가능.

3.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반 금융기관과 달리 신용카드사에 신용정보 자료를 요청한다는 점이다.

가.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의 개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채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따라 신용불량자 외 다수 채납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예측되어 채납(법인)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당좌개설계좌를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 채납자의 카드 개설현황 및 거래금융기관을 조회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결제계좌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압류할 경우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어 채납자가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어 채납세 징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는 일반예금 압류 방법과 절차가 동일하며, 제 3채무자는 압류대상기관인 금융기관으로서 채납자의 소유계좌 추적방법에 대한 정보요청기관이 일

나. 울산광역시 중구 추진사례

- 50만원 이상 채납자 5,238명 국민카드(주) 외 6개 카드사에 자료요청 : 2003. 1. 29
- 삼성카드(주), 비씨카드(주) 조회 결과 회시 : 2003. 2. 23.
 - 신용카드 결제계좌 건수 1,935건(1인 2개이상 계좌 소유자 포함)
- 회신결과를 토대로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자료 구축
 - 신용카드 결제계좌 소유 채납자 1,084명 2,311백만원
- 채납자에 대한 압류실시 : 2003. 2. 24 ~ 3. 31
 - 압류조서 및 제 3채무자 채권압류통지서 작성 : 2003. 2. 24 ~ 3. 20
 - 압류대상자 압류사실 등기 통지 : 2003. 3. 21 ~ 3. 31.
- 결제계좌 압류의뢰 기관 전국 금융기관 점포별 (우리은행 외 150개소)
- 결제계좌 압류현황 : 1,084명, 2,3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A)	2004(B)	증 감(A-B)
총 계		9,952	8,773	1,179
현년도	시 세	8,984	8,230	754
	구 세	391	283	108
과년도	시 세	495	229	266
	구 세	82	31	51

○ 체납세 징수 실적

- 압류이후 자진납부자: 406명, 788백만원
- 압류이후 추심납부자: 278명, 398백만원

○ 전년도 대비 세입 현황

- 수납일자: 2003. 3. 31일 기준

(단위: 백만원)

다. 신용카드 결제계좌압류의 징수효과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의 시행효과는 울산광역시 중구 추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계좌를 압류함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한 1개월 동안 징수된 체납액이 현·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78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전년 징수실적의 대비 2.5배 증가하는 등 단기간 징수실적이 매우 높다.

또한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하며, 납세의무 태만 및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융자산조회는 전국 지점에 대한 일괄조회가 불가능하고 주로 체납자 인근 몇몇 은행지점에 대하여만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사실상 체납자 소유의 계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결제계좌는 전국 금융기관 파악이 가능하여

관내 예금압류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압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예금압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라. 압류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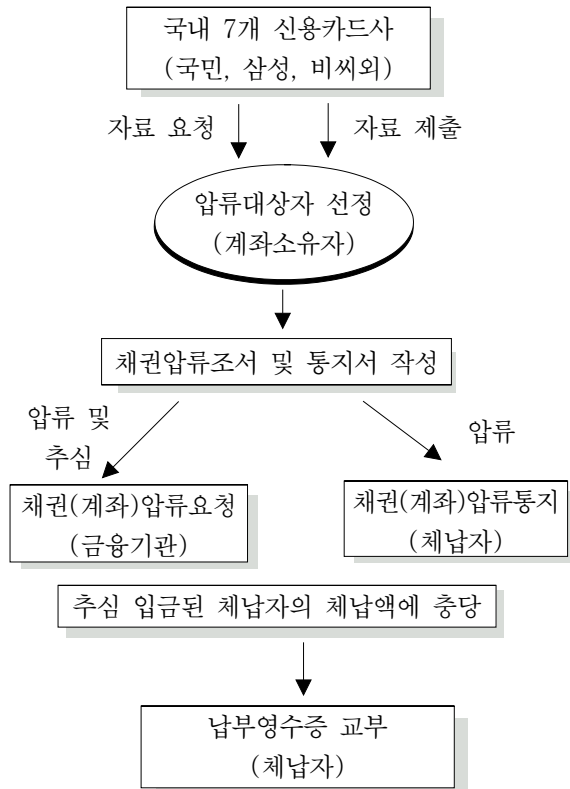
첫째, 금융정보 요청기관이 신용카드사로 부터 제공받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즉,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직장, 전화번호, 자동이체 계좌번호, 이체 금융기관명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므로 업무추진 시 개인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둘째,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한 경우 신속하게 팩스에 의한 문서접수로 압류해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매월 말에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법인의 부도 또는 체납자의 개인 신용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 신용카드 결제계좌압류의 법적근거

- (1)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 (3)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제한의 통보)

바. 신용카드 결제계좌압류의 업무 흐름도



4. 보험금 압류

가. 보험금 압류의 개요

보험금 압류는 채납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국내 전국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등 국내 보험기관에 조사하여 압류대상물건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시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채납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통해 채납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징수방법이다. 보험금 압류는 압류를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특성상 납입기간 이후나 중도 해약, 혹은 납입을 유지하다 실효가 된 경우 강제추심이 가능하므로 보험금 압류 이후 수시로 추심관리를 하여야 한다.

채납자가 무재산자라도 사망·화재·사고 등 뜻하지 않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가 많으며, 보험금을 압류하였을 시 채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면 자진납부, 보험 약관액 대출, 중도 해약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채납자의 보험금을 압류하였을 경우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수익자(채납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즉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납세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든지 혹은 채납세를 납부한 후 보험압류해제 조치를 하여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채납세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나. 울산광역시 중구 추진사례

- 채납자에 대한 보험금 가입사실 조사
 - 조사기간: 2003. 3월~5월
 - 조사대상: 지방세 채납액 300만원이상 채납자 1,718명
 - 조사방법: 채납자의 전산자료와 보험사의 보험전산자료를 비교검색
- 보험금 조회사: 대한생명보험외 26개소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압류 자료 구축

(단위 : 백만원)

보험 기관	삼성 생명	대한 생명	현대 해상	삼성 화재	흥국 생명	S K 생 명	알리안츠 생 명
인 원	181	148	79	68	57	37	31
압류 금액	478	646	381	710	173	84	164

- 보험가입이 확인되고 실익이 있다고 판명된 체납자

▶ 783명 3,421백만원

○ 추진일정 : 2003. 4. 1~6. 30(90일)

- 보험금 압류예고 및 징수독려 실시 : 2003. 4. 1~5. 31.

- 미납부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 : 2003. 6. 1~6. 30.

○ 압류대상자 수시 추심 및 독려 징수 관리

- 보험금 압류 및 실효된 보험금 동시 추심 실시 : 2003. 6. 1~6. 30.

○ 체납자에 대한 압류 : 2003. 6. 10

- 인원 및 압류 금액 : 783명 3,421백만원

○ 보험기관별 압류현황

○ 체납액 징수 : 402명, 524백만원

- 자진납부 : 65명, 235백만원

- 추심 : 337명, 289백만원

다. 보험금 압류의 징수효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험증권 압류는 적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재산처분을 금

지할 수 있으며, 압류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은 만기도래 또는 계약조건의 성취시 가능한 것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금을 압류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 할 수 있고, 채권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체납세 조기 납부를 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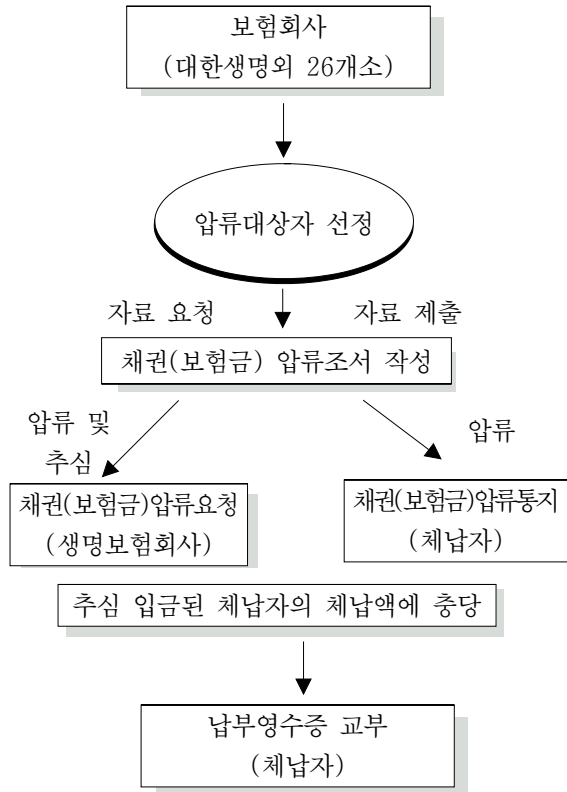
라. 압류시 주의사항

보험금 압류시 주의사항으로는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강제 추심을 실시한 경우 추심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계약의 상실·보험계약의 부활 불가능 등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험용어 숙지 등 세무공무원의 보험관련 업무연찬을 필요로 한다.

마. 보험금 압류의 법적근거

- (1)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 (3)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바. 보험금 압류의 업무흐름도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금융재산 압류에 있어 현행제도의 문제점

부동산의 단순한 압류로는 부동산 시세의 2%도 되지 않는 채납액으로 사실상 공매진행이 어렵고 또한 압류순위에서도 국세에 뒤질 수밖에 없어 채납세의 징수가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금융재산의

압류에 의한 조기 채권확보는 채납세 징수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금융재산 조회에 따른 문제점이다. 금융기관에 예금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무수한 금융점포에 모든 채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재산조회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조회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조회대상자가 매우 많으므로 금융기관에서는 업무량이 폭주함으로써 조회에 소홀하게 되고 사실상 예금 압류대상자가 있더라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2항의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금융재산 추적은 어려운 현실이다.

둘째,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 할 수 있는 지방세채납액 기준 문제이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채납액 1천만원 이상인 채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에 비하여 그 채납규모가 주로 소액이며 일괄조회 대상자 수가 극소수로서 지방세 채납액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징수수단으로서는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

는 점이다.

셋째, 금융재산 조회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및 민원에 대한 문제이다. 금융자산조회를 요청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대량의 자료를 유포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이 예상되며, 또한 금융재산의 압류 및 추심은 주로 채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행하여지므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리액은 늘어만 가는데, 제도보완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시에는 금융재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한 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리시에는 일괄조회가 불가능하고 “특정점포”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채납자 중에는 체납세를 납부할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겨 무재산자로 취급받아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액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채납자가 소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속속들이 찾아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등 엄격한 세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를 지정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본점 일괄조회” 차단) 은폐 금융자산

을 포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82조 3항과 소득세법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 등의 명의개서 자료와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등의 금융재산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한편 지방세 체납정리시 금융정보조회에 있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채납자의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채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본점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기관을 전 국은행연합회로 일원화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이는 대신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국세징수법 제7조의 3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2004. 1. 29일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 3 >>

● 法律 第7116號(2004.1.29)

제7조의3 (지급조서 등의 채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납자의 재산조회 등 채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 法律 第7115號(2004.1.29)

第4條 (金融去來의 秘密保障) ②第1項 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者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特定店鋪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채납액 1천만원 이상인 채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去來情報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部署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4.1.29>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의 주요 취지는 과세 행정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세 채납자의 재산을 조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해당 부서에 1천만원 이상 채납자에 대하여는 일괄 조회하여 채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부과규모가 취득세·등록세를 제외한 기타세목 대부분이 5백만원 미만으로, 채납액 1천만원 이상인 채납자가 극소수이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중구 전체 채납자수가 38,129명이고 1천만원 이상 채납자는 190명 정도로서 채납자 구성원의 4%정도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채납액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효율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금융정보를 일괄조회 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체납액 2백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 징수의 실정에 맞는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신용카드사, 보험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제공되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방어벽이 제대로 구축된 지방세 프로그램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즉시 안내하여 체납자가 신용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납세회피로 지방세 체납액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징수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하였다.

기존의 체납세 징수방법의 하나인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는 체납세 징수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금융기관의 예금압류 또한 납세자의 주거에 은행을 알기가 쉽지 않고 주거에 은행을 알더라도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차원에서 예금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아 그 실효성이 적으며, 체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의 징수방법 또한 체납자가 고액이거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타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징수방법과 병행하여 카드 매출채권압류, 결제계좌 압류, 보험금 압류 등 다양하고 집중적인 방법으로 압류조치를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수록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인 확대에 의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자치제도정책을 위협하고 있어 다양한 채널의 징수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주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새로운 세원발굴보다는 기존의 세원을 최대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세수입의 증대와 행정비용의 절감은 물론, 납세자 측면에서 세부담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공평하게 행사함으로써 납세자의 기회균등 등 조세정의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